

8. '91年度 土地超過利得의 算定基礎가 되는 地價上昇率

國稅廳告示 第1992-4號

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1항에서 정
한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가
상승율을 동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
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

같이 고시합니다.

※ '91년도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
되는 지가상승율 : 12.78%

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